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문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육아휴직 기간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육아휴직 기간연장의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범위를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규정(안 제1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분쟁의 예방과 해결”을 “모성 보호 및 일·가정의 양립 지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장애아동의 범위)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.

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제15조 ~ 제19조 (생 략)</u>	<u>제3장 모성 보호 및 일·가정의 양립 지원</u> <u>제15조(장애아동의 범위)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.</u> <u>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</u> <u>제16조 ~ 제20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76